

한국곡물제분공업협동조합

선거관리위원회

우 140-871/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09(한강로2가) 1302호
TEL 2077-1313~5/ FAX 2077-1316/ <http://www.kogmic.or.kr/>

수 신 : 전 회원업체 2023. 2. 17.

제 목 : 선거운동 관련 안내

1.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.

2. 2023년 2월 27일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선출과 관련하여 정관 제44조(선거운동의 제한)와 선거관리규정 제8조(선거운동 및 기간)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숙지하시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첨 부 : 1. 정관 제44조(선거운동의 제한)

2. 선거관리규정 제8조(선거운동 및 기간). 끝.

한국곡물제분공업협동조합

선거관리위원장 강택선



정관 제44조(선거운동의 제한)

정관 제 44 조(선거운동의 제한) ① “선거운동”이라 함은 임원의 선거에 있어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. 다만, 임원선거규정에서 정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.

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
1. 선거인에게 금전·물품·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(公私)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,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
2.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

③ 누구든지 제2항제1호 또는 같은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
④ 선거운동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. 다만,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
⑤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(후보자를 포함한다)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운동 기간중은 물론 그 이외의 기간중에도 조합원(대의원을 포함한다)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.

⑥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
1. 선거벽보의 부착
2. 선거공보와 인쇄물의 배부
3. 합동연설문 또는 공개토론회 개최
4. 전화(문자메세지를 포함한다)·컴퓨터통신(전자우편을 포함한다)의 이용

⑦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·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.

⑧ 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철거·회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⑨ 그 밖에 선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선거규정으로 정한다.

선거관리규정 제8조(선거운동 및 기간)

임원선거규정 제 8 조(선거운동 및 기간) ① “선거운동”이라 함은 특정후보자를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. 다만,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·의사의 표시·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업무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.

②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
1. 선거벽보의 부착
2. 선거공보와 인쇄물의 배부
3. 합동연설문 또는 공개토론회 개최
4. 전화(문자메세지를 포함한다)·컴퓨터통신(전자우편을 포함한다)의 이용

③ 선거운동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.